

—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—

제 안 설 명 서

2023. 11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[총무과]

제안 설명서

설명자: 총무과장

「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, 제안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제안제도의 법적근거인 「행정절차법」 및 「국민 제안 규정」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8조에 따라 공무원 제안 규칙을 별도 제정하여,
- 국민의 제안제도 참여 활성화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먼저,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,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4조는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제안준비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-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제안심사위원회 및 제안실무심사위원회, 제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.
-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우수제안의 시상·부상·추천에 관한 사항으로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,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표창 및 부상 등을 반환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- 끝으로,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채택제안의 실시와 제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

- 본 조례안을 2023. 10. 4일부터 10.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,
- 2023. 11. 1일 조례·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는 제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」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오니,
-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00923146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11. 03.

제 출 자 : 달서구청장

(총무과장)

1. 개정이유

상위 법령인 「행정절차법」 및 「국민 제안 규정」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안제도 참여 활성화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

2. 주요 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
나. 제안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8조)

다. 우수제안의 시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1조)

라. 채택제안의 실시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~제13조)

3. 전부개정조례안: 붙임 참조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행정절차법」 제52조의2 및 「국민 제안 규정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비용추계서: 비대상

라. 행정규제 심사결과: 해당사항 없음

마.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: 원안 동의

바.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: 해당사항 없음

사. 입법예고(2023. 10. 4.~10.24.)결과: 의견없음

아.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행정절차법」 제52조의2 및 「국민 제안 규정」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제안”이란 구정에 관심 있는 사람이 대구광역시달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 「국민 제안 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.
2.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) 구청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 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·설비 또는 각종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5조(제안심사위원회) ① 구청장은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1.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및 시상 심사
2. 부상의 지급금액 결정
3. 우수제안의 추천
4. 제10조2항에 따른 기념품의 지급 결정
5.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② 위원회 기능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정조정위원회 조례」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.

제6조(제안실무심사위원회)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채택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심사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(수당 등) 제5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제안의 심사) 구청장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안을 심사하되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9조(우수제안의 시상)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 중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제안(이하 “우수제안”이라 한다)을 선정하여 금상·은상·동상·장려상으로 등급을 구분하여 시상 할 수 있으며, 각 등급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않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으며, 「상훈법」·「정부 표창 규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·표창 선발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한다.

③ 우수제안에 따른 수상 후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표창 및 부상 등을 반환 조치하게 할 수 있다.

제10조(부상 등의 지급) ① 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한다. 다만,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9조제1항의 등급에 해당되지 아니 하나, 연구·노력 등이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우수제안의 추천)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제안을 대구광역시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추천할 수 있다.

제12조(채택제안의 실시) 구청장은 채택제안을 제안된 내용대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·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13조(관리 및 성과) 구청장은 제안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영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그 제안을 관리해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제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【관 계 법 령】

□ 행정절차법

제52조의2(국민제안의 처리) ① 행정청(국회사무총장·법원행정처장·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제외한다)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(이하 “국민제안”이라 한다)을 접수·처리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국민 제안 규정

제2조(정의)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국민제안”이란 국민(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「행정절차법」 제52조의2에 따른 행정청(이하 “행정청”이라 한다)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「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

나.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

다.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

라.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

마. 단순한 주의환기·진정(陳情)·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

바. 특정 개인·단체·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

사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

2. 삭제 <2023. 8. 1.>

3. “채택제안”이란 행정청이 접수한 국민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.

4. “자체우수제안”이란 행정청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(국방·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)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.

5. “중앙우수제안”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.

제8조(국민제안의 심사) ① 행정청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.

1. 실시 가능성
2. 창의성
3. 효율성 및 효과성
4. 적용 범위
5. 계속성

제22조(관리기간) 행정청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,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·관리해야 한다.

제23조(실시 성과의 측정) ① 행정청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, 예산 절감 또는 국고·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·우·미·양·가로 측정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1.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
2.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
3.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
4.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 개선
5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③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·조세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국민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.

□ 지방공무원법

제78조(제안제도)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.

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,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